



### 1. 전기안전관리자 통합(2개단지 아파트) 선임 가능여부

- 폭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1동과 2동이 위치하고, 각 단지별로 한전과 계약하여 별도구좌로 수전 받고 있는 경우에 양 단지 공동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 전기용량(발전기 포함)이 2,800kW인 경우,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몇 년 경력이 있어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 그러나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1단지와 2단지가 도로(국도)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구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전기수용설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2,000KW이상의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 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2 참조) (인터넷민원질의, 2005. 1. 25)

### 2.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통보 적법여부

- 5,800평 건물에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선임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관리인과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 해임통보후 14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이 기간이 적법한 것인지
  - 상기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시켜도 무방한지

Question

### Answer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자(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전기안전관리자)간의 고용계약 또는 협약등에 의한 것으로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통보 기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자 채용과 해임 관련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노동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 1. 24)



### 3.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동일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 Answer

- ◎ 전기사업법령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주택관리사 및 방화관리자 겸직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업무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한 사람이 겸직할 경우, 해당 자격증 개별법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주택관리사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또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방화관리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 6. 28)

###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대상인지

- 2001. 4. 7 ~ 10월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경력이 있는 자가 2004. 4월에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임부터 하고 교육을 나중에 받으면 되는지

Question

#### Answer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5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이 규정은 신설된 규정이므로 교육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동법시행규칙이 공포된 2001년 4월 7일부터 3년 이내 즉 2004년까지 최초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 최초교육을 이수 후부터는 이수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이상 다시 받으면 됩니다.
- ◎ 동법 개정시행일(2001년 4월 7일) 이전의 선·해임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동법 개정 이후 선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 전기안전관리자로 해임된 경우 마지막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최초 선임자로 간주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4. 5. 26)